



제320회 임시회

2013.05.08.

도민을 섬기는 열린 의회

전문위원 검토보고

-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
조례안

교육위원회 전문위원

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교육감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3년 04월 26일
- 회부일자 : 2013년 05월 01일

3. 제안이유

- 「교육공무원법」(법률 제11527호, 2013.6.12.), 「지방공무원법」(법률 제11531호, 2013.6.12.) 개정 및 「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」(2013.6.12.예정)에 따라 지방직으로 전환되는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을 포함한 지방공무원의 총수, 직급별 정원채정기준 및 단위기관별 정원의 일부를 개정하고, 지역교육청 위센터(Wee Center)의 전문상담인력을 한시정원으로 증원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가. 현행 지방공무원의 총수 개정(안 제2조)

※ 지방공무원 총수 증원 : 2,898명→3,115명

(지방공무원 기존 정원에 교육전문직 정원 217명 포함)

나.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 개정(안 제3조제2항, 별표2)

1) 기능직: 6급 8%이내, 7급 20%이내, 8급 36%이내, 9급 36%이상

※ 현행기준: 6급 6%이내, 7급 15%이내, 8급 26%이내, 9급 53%이상

2) 교육전문직원: 장학관·교육연구관 30%이내, 장학사·교육연구사 70%이상

※ 현행비율(정원): 장학관·교육연구관 24.4%(53명), 장학사·교육연구사 75.6%(164명)

다. 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·직급별 정원 개정(안 제4조, 별표3)

1) 일반직 92명 증원: 1,553명→1,645명

가) 4급 이상 2명¹⁾, 5급 이하 90명

2) 기능직 92명 감원: 1,324명→1,232명

가) 사무직렬 일반직 전환 △86명, 결원직렬 △6명

3)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217명 신설

가) 4급 상당 이상 장학관·교육연구관 31명²⁾

나) 5급 상당 이하 장학관·교육연구관 및 장학사·교육연구사 186명

라. 지역교육청 위센터 한시정원(전문상담인력) 증원(안 제5조, 별표4)

1) 직급, 정원 및 존속기한: 교육행정8급 17명³⁾, 2016. 6.30.까지

2) 해당 정원은 계약직공무원 “라”급으로 채용하여 존속기한까지 운용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「교육공무원법」 및 「지방공무원법」 개정에 따라 지방직으로 전환되는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을 포함한 지방공무원의 총수와 직급별 정원채정기준,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, 지역교육청 위센터 한시정원 등을 개정한 것으로,
- 안 제2조의3을 신설하여 지방공무원 총수를 교육전문직 정원 217명을 포함한 3,115명으로 조정하고,
- 안 제3조제2항 별표2의 기능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 기준을 <표 1>과 같이 전국 시·도교육청과 형평을 맞춰 상위직급 비율을 확대함으로써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원채정기준을 개정하고, 교육전문직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을 신설.

1) 4급 정원 2명 책정 승인 : 교육정보원 행정정보부장, 단재교육연수원 행정연수부장

2) 4급 상당 이상 정원 31명 책정 승인 : (본청)국장·과장 7명, (직속)기관장·부서장 12명, (지역교육청)교육장·국장 12명

3) 한시정원 책정 승인: 교과부 지방교육자치과-6873(2012.12.14.)

- 안 제4조 별표3은 사무직렬 일반직 전환 등에 따른 92명의 기능직 정원 감원과 이에 따른 일반직 92명 정원 증원 및 교육전문직원 217명의 기관별 정원 신설.
- 안 제5조 별표4에 지역교육청 위센터 전문상담인력 17명의 한시정원 증원을 반영한 것으로 제반 여건을 고려해 볼 때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

<표1>

전국 시도교육청 기능직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

(기준: 2013. 4월 정원 조례)

직급	전남	서울	부산	대구	인천	광주	경기	강원	경북	경남	전북	충남	울산	대전	충북	
기능6급	9%	8%										6.5%	6%	6%	8%	
기능7급	20%										16%	15%	15%	20%		
기능8급	36%										26%	31%	39%	26%	36%	
기능9급	35%	36%										46%	46.5%	40%	53%	36%

※ 상위직급 비율 상위 순이며 세종과 제주교육청은 제외

[별표 2]

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(제3조제2항 관련)

1. 일반직공무원

구 분	4급이상	5급	6급	7급	8·9급
비 율	2%이내	8.5%이내	33%이내	44%이내	12.5%이상

2. 기능직공무원

구 분	기능6급	기능7급	기능8급	기능9급
비 율	8%이내	20%이내	36%이내	36%이상

3. 연구직공무원

구 분	연구관	연구사
비 율	-	100%

4. 별정직공무원

구 분	5급상당	6급상당	7급상당	8급상당
비 율	31%이내	16%이내	47%이내	6%이상

5. 교육전문직원

구 분	장학관·교육연구관	장학사·교육연구사
비 율	30%이내	70%이상

[별표 3]

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단위기관별·직급별 정원표(제4조 관련)

단위기관별 직급별	총계	도의회 사무처	본청 (직속기관 포함)	지역교육청 (소속기관 포함)	공립 각급학교
총계	3,115	-			
정무직 계	1		1		
교육감	1		1		
일반직 계	1,645	-			
3급	1		1		
3·4급	4		4		
4급	19	1	17	1	
5급이하 소계	1,621	-			
기능직 계	1,232	-			
6급이하 소계	1,232	-			
연구직 계	7	-			
연구사 소계	7	-			
별정직 계	13	-			
5급이하 소계	13	-			
교육전문직원 계	217	-			
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·교육연구원	31		19	12	
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·교육연구원 및 장학사·교육연구사	186	-			

[별표 4]

지방공무원의 한시정원표(제5조 관련)

단위기관	종류	직렬	직급	정원	존속기한	비고
본청	일반직	행정	4급	1	2015.2.28.	방과후학교지원단
				1	2015.8.31.	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
		교육행정	5급	1		
			6급	1		
			7급	1		
지역교육청	일반직	교육행정	8급	17	2016.6.30.	위 프로젝트(Wee Project) 사업 전문상담사
합계				22		

관계법령 발췌

□ 교육공무원법 [시행 2013.6.12.][법률 제11527호, 2012.12.11.]

제58조(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임용)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은 교육감이 임용한다.

□ 지방공무원법 [시행 2013.6.12.][법률 제11531호, 2012.12.11.]

제2조(공무원의 구분)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(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, 이하 "공무원"이라 한다)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.

② "경력직공무원"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(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)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,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일반직공무원: 기술·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
2. 특정직공무원: 공립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,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, 자치경찰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과 그 밖에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

③ ~ ④. (생략)

□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

[시행 2013.6.12.예정][대통령령 제 호, 2013.5.3.예정]

제15조(정원의 관리) ① 교육감은 조직 간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의 종류별·직급별 정원채정기준을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② 교육감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 및 감축 현황을 조사·확인하여야 하고, 그 조사·확인 결과를 기관별·기구별·종류별·직렬별·직급별로 종합하여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③ 교육감은 새로운 증원 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시·도 교육청의 정원의 범위에서 정원을 자체조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조정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.

1.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한 분야의 인력
2.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구 또는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
3. 업무의 성질상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

제15조의2(정원 책정의 승인) ① 교육감은 일반직 4급 이상의 정원을 책정(정원 감축 및 직렬 변경은 제외한다)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교육감은 정원 책정의 적정성, 해당 직위의 직무 분석 등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에 보직될 수 있는 교육전문직원(「교육공무원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서 교육감에 소속된 교육전문직원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정원을 책정(정원 감축은 제외한다)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교육감은 정원 책정의 적정성, 해당 직위의 직무 분석 등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본청의 과장·담당관 이상
2. 지역교육청의 국장 이상
3. 직속기관의 부서장(일반직 4급 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보직되는 직위로 한정한다) 이상

제16조(별정직 정원) ① 별정직 정원은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책정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별정직 정원은 직무의 성격상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만 교육감이 각 직무분야별·상당계급별로 책정하되, 그 수는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하는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.

③ 교육감은 별정직 4급 상당 이상의 정원을 책정(4급 상당 이상의 계급을 조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교육감은 별정직 정원책정사유 및 임용자격기준을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8조(한시 정원) ① 교육감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

일정 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한시정원을 둘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그 한시기구의 존속기간이 끝나는 날에 소멸된다.

③ 한시정원은 한시정원이 아닌 정원으로 상계(相計)하여 조정할 수 없다.

④ 한시정원과 직급별 정원은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⑤ 한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시정원만을 두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시정원을 책정할 수 있다.

⑥ 제5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⑦ 제6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간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차례만 할 수 있다.

제20조(정원의 규정) ① 시·도 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1.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·도의회 사무처 정원

2. 분청, 지역교육청, 직속기관, 지역교육청 소속 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(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.)

3. 교육전문직원의 정원

②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종류별·직급별로 구분하여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5급 이하 직급별 정원 및 교육전문직원 중 제15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교육전문직원을 제외한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로 해당 시·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. 다만, 상위직급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같은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.

④ 직렬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로 해당 시·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